



3. 한국거래소 규정
-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가.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| 바.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|
| 나.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| 사.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|
| 다.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 | 아.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     |
| 라.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| 자. KRX금시장 운영규정      |
| 마.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|                     |

### 3. 한국거래소 규정\*

#### 가.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 (2016/4/22 개정, 2016/4/25 시행)

##### 1) 개정 이유

- 외국기업 상장활성화를 위해 상장목적으로 설립된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(국내 SPC)가 지배하는 해외자회사의 특수한 경영 및 회계환경을 감안하여 상장예비심사서류 제출의무를 합리화하되,
  - 심사서류 중 해외 현지국의 관련법규 또는 회계처리기준 등에 따라 작성이 면제되고 심사에 미치는 영향이 낮은 경우 등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제출부담을 개선하기 위해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

##### 2) 주요 내용

-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 등의 심사서류 간소화 (별표 1)
  - 감사보고서, 감사인 확인서한 및 법률의견서 등에 대한 제출범위를 실질적인 상장심사 대상인 직접 지배하는 자회사 및 주요 자회사 등 상장심사에 필요한 자회사로 한정
    - 주요 자회사란, 지주회사 재무상표 상 자회사 장부가액이 큰 상위 75% 해당하는 자회사 (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조 제1항 제23호)
  - 다만, 매출비중 등을 고려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타 자회사에 대해서도 제출대상 확대
  - 또한, 보통주권과 외국주권 등에 혼재되어 있는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의 예비심사 신청서류를 별표1 내에 별도 신설하여 이용자 편의를 제고

\* 해당 내용은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됨



### 〈심사서류 제출대상 개선내용〉

구 분	기 준	개 정	비 고
감사보고서	신청인 및 모든 자회사	신청인 및 직접지배 자회사	필요시 주요 사업 회사를 대상에 포함
감사인 확인서한	모든 자회사		감사보고서 수치가 심사요건 관련시 제출
법률의견서	모든 자회사	신청인 및 주요 자회사	필요시 기타 자회사를 대상에 포함
내부회계운영	주요 자회사		

감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의무 합리화 (별표 1)

-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의 감사보고서 제출 부담 합리화
  - 설립 첫해에 국내 SPC가 외감법 대상이 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, 감사인 자격 등을 상향(Big4 수준)하여 외감법에 따른 감사보고서가 아닌 경우에도 예비심사 제출서류로 수용
- K-IFRS 전환을 위한 재작성 부담 완화
  - 회계기준변경을 위한 재작성은 지정감사인 또는 당시 감사인이 할 수 있도록 현실화

분할재상장 예비심사 제출서류 합리화 (별표 1)

-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분할등으로 설립된 경우에도 실질적인 영업활동 기간을 인정하고 이전된 영업부문에 대한 검토보고서 제출을 허용

교환사채발행 관련 보호예수제도 합리화 (별표 2)

- 교환사채권에 대한 보호예수는 원주에 대한 보호예수와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이를 원주에 대한 보호예수에 갈음할 수 있도록 허용

분할관련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기준 합리화 (제50조 제1항 제4호)

-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인 주된 영업정지 판단시에도 연결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

대표주관계약 체결결과 통보의무 완화 (제4조의3)

- 금융투자협회에 주관계약체결을 통지할 경우 거래소에 대한 통지의무는 면제



적격 해외거래소 구조조정사항 반영 (제10조)

- Euronext가 NYSE Euronext에서 분리·독립되어 상장(2014/7)됨에 따라 NYSE와 Euronext로 해외거래소를 구별

**나.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개정 (2016/4/28 개정, 2016/5/2 시행)**

**1) 개정 이유**

중요정보 포괄적 공시제도 도입(2016/5/2)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

- 공시대상 중요정보 판단기준 등 세칙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

그 밖에 중요내용 공시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대상 신설 등 실무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

**2) 주요 내용**

중요정보 판단기준 신설 등 (제4조의5)

- 중요정보 포괄적 공시제도 도입에 따라 상장법인이 스스로 정보의 중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
  - 수시공시 의무비율 적용이 가능한 사항과 곤란한 사항으로 구분

구 분	판단 기준
수시공시 의무비율 적용 가능 사항	의무비율(매출액, 자기자본, 자산총액 5%, 대규모법인 2.5%) 이상 * 다만, 일상적 경영활동사항을 제외
수시공시 의무비율 적용 곤란 사항	해당 기업의 특성(규모·상태·업종 등)을 고려시 경영·재산상태에 상당한 영향

중요정보 포괄주의에 따른 공시유보사항 신설 (제18조 제1항 제3호)

- 포괄조항에 따라 중요정보를 공시하는 경우 경영상 비밀유지 등을 위해 상장법인이 공시유보 신청이 가능한 사항 규정
  - 공시유보 신청이 가능한 사항이란, 해당 법인이 경영상 비밀유지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유보범위를 명시한 사항



□ 자료제출 요구 불응시 벌점부과 신설 (제18조의2)

- 포괄조항에 따른 공시의무 미이행 등 확인을 위한 거래소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시 불성실공시법인 벌점 2점 부과

□ 중요정보 포괄주의 도입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 (제8조 제17호 등)

- 자율공시 항목 중 수시공시 포괄조항과 중복우려가 있는 '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'을 삭제
- 별표 2. 불성실공시 제재심의기준 중 자율공시 포괄조항을 삭제하고, 수시공시의무비율 미만 자율공시항목을 '통상의 위반'에 포함

□ 매매거래정지 대상 중요공시사항 추가 (제16조 제1항 제1호)

- 기업 부실징후 관련 공시사항으로 가장납입, 대규모 손상차손을 중요내용 공시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대상으로 추가
  - 가장납입 : 임원등의 자기자본 대비 5%(대규모법인 2.5%) 이상의 가장납입 혐의사실 확인 등
  - 대규모 손상차손 : 매출채권 이외의 채권에서 발생한 자기자본 대비 50%(대규모법인 2.5%)이상의 손상차손

**다.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개정 (2016/4/27 개정, 2016/5/2 시행)**

**1) 개정 이유**

- 수시공시 중 중요정보에 대한 포괄조항 도입을 위하여 「코스닥시장 공시규정」을 개정(2015/12/30)함에 따라 세칙으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, 그 밖에 공시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보완 필요사항을 개선하기 위함

**2) 주요 내용**

□ 중요정보 판단의 구체적 기준 마련 (제7조의2)

- 중요정보에 대한 포괄조항 도입에 따라 상장법인이 중요정보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 마련



- 공시의무비율기준 적용이 가능한 사항과 적용이 곤란한 사항으로 구분
  - \* 공시의무비율기준 적용이 가능한 사항 : 당해 사실 또는 결정이 영업·생산활동, 재무구조(발행증권, 채권·채무, 손익, 결산, 투자활동) 등의 10%(대규모법인 5%) 이상 해당하는 경우
  - \* 공시의무비율기준 적용이 곤란한 사항 : 당해 사실 또는 결정이 해당 법인의 특성(규모·현황·업종 등)을 고려할 때 경영 또는 재산상태 등에 상당한 영향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

□ 자율공시 예시사항의 합리적 정비 (제13조)

- 자율공시 예시사항 중 중요정보에 해당될 수 있는 사항은 자율공시 대상에서 제외
  - 중요정보에 해당될 수 있는 사항 ① 신물질·신기술 관련 중요한 자산 취득·양수도, ②중요한 임상시험 단계 개시 or 종료, ③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과금체계 결정·변경, ④ 기술도입·이전계약 체결 or 중도 해지

□ 포괄조항 도입에 따른 시장관리 절차 정비 및 구체화

- (공시유보 신청) 포괄조항에 따라 중요정보를 공시함에 있어 공시유보 신청이 가능한 사항을 규정 (제20조 제1항)
  - 공시유보 신청이 가능한 사항이란, 경영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와 유보범위를 명시한 사항
  - 이 경우, 해당 법인의 공시유보 신청에 대해 경영상 비밀유지와 투자자 보호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공시유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공시유보 승인
- (자료제출 불응시 부과벌점) 포괄조항에 따른 중요정보 공시의무 위반 확인 등을 위한 거래소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시 벌점(2점) 부과 (제17조의3)
  -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점 이내에서 벌점 부과 가능(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35조 제4항)
  - 당해 벌점 부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과벌점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음

□ ‘최대주주의 주식담보제공 계약체결 공시’ 관련 제재 합리화 (별표 1)

- 최대주주의 주식담보제공 계약 체결 등 공시에 대해 위반의 중요성을 ‘경미한 위반’으로 처리
  - 다만, 해당사항을 공시하지 아니하던 중 담보권이 실행되는 경우 또는 M&A과정에서 주식양수대금 등 차입을 위한 주식담보제공 계약의 경우는 제외



**라.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(2016/4/22 개정, 2016/4/25 시행)**

**1) 개정 이유**

□ 자본감소 후 제3자배정 유상증자 등이 다수 발생시, 발행가격이 평가가격 대비 현저하게 낮은 대규모 신주발행에 대하여 평가가격 및 호가가격 산정 기준을 개선하기 위함

**2) 주요 내용**

□ 자본감소 후 다수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등에 대한 신주발행가격이 자본감소에 따른 평가가격의 10% 미만이고, 발행주식수가 종전의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평가가격 및 호가가격 산정방법 개선 (별표 1 제5호)

— 평가가격 : 가중평균가격으로 산정

- (무상 자본감소)

평가가격 = [(전일종가×자본금감소전 주식수) + 제3자배정 유상증자 등에 따른 신주발행금액 합계]/해당 상장일의 주식수

- (유상 자본감소)

평가가격 = [(전일종가×자본금감소전 주식수) + 제3자배정 유상증자 등에 따른 신주발행금액 합계 - 주주에게 지급되는 감자대가 합계]/해당 상장일의 주식수

\* 해당 상장일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 등에 따른 추가상장일 및 자본감소에 따른 변경상장일을 말하며, 매매거래정지 종목의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 해제일을 포함

— 호가가격범위 : 최저호가가격(1원)~최고가가격(300%)

- 최저호가가격은 호가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
- 최고호가가격 산정시 적용비율을 150% → 300%로 상향

**마.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(2016/4/22 개정, 2016/4/25 시행)**

**1) 개정 이유**

□ 자본금감소 후 제3자배정 유상증자 등이 다수 발생시, 발행가격이 평가가격 대비 현저하게 낮은 대규모 신주발행에 대하여 평가가격 및 호가가격 산정 기준을 개선하기 위함



## 2) 주요 내용

□ 자본감소 후 다수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등에 대한 신주발행가격이 평가가격 대비 20% 미만이고, 발행주식수가 종전의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평가가격 및 호가가격 산정방법 개선 (별표 1 제2항 제3호 다목)

— 평가가격 : 가중평균가격으로 산정

• (무상감자의 경우)

평가가격 = [(자본금감소 전 최종 매매거래일의 종가×자본금감소전 주식수) + 제3자배정 유상증자 등에 따른 신주발행금액 합계]/해당 상장일의 주식수

• (유상감자의 경우)

평가가격 = [(자본금감소 전 최종 매매거래일의 종가×자본금감소전 주식수) + 제3자배정 유상증자 등에 따른 신주발행금액 합계 - 주주에게 지급되는 감자대가 합계]/해당 상장일의 주식수

\* 해당 상장일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 등에 따른 추가상장일 및 자본금감소에 따른 변경상장일을 말하며, 매매거래정지 종목의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 해제일을 포함

— 호가가격범위 : 최저호가가격(1원)~최고가가격(300%)

• 최저호가가격은 호가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

• 최고호가가격 산정시 적용비율을 150% → 300%로 상향

## 바.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(2016/4/25 개정, 2016/4/26 시행)

### 1) 개정 이유

□ 자본금감소 후 제3자배정 유상증자 등이 다수 발생시, 발행가격이 평가가격 대비 현저하게 낮은 대규모 신주발행에 대하여 평가가격 및 호가가격 산정 기준을 개선하기 위함

### 2) 주요 내용

□ 자본감소 후 다수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등에 대한 신주발행가격이 평가가격 대비 20% 미만이고, 발행주식수가 종전의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평가가격 및 호가가격 산정방법 개선 (별표 1 제2항 제3호 다목)

— 평가가격 : 가중평균가격으로 산정



- (무상감자의 경우)

평가가격 = [(자본금감소 전 최종 매매거래일의 종가×자본금감소전 주식수) + 제3자배정 유상증자 등에 따른 신주발행금액 합계]/해당 상장일의 주식수

- (유상감자의 경우)

평가가격 = [(자본금감소 전 최종 매매거래일의 종가×자본금감소전 주식수) + 제3자배정 유상증자 등에 따른 신주발행금액 합계 - 주주에게 지급되는 감자대가 합계]/해당 상장일의 주식수

\* 해당 상장일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 등에 따른 추가상장일 및 자본금감소에 따른 변경상장일을 말하며, 매매거래정지 종목의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 해제일을 포함

— 호가가격범위 : 최저호가가격(1원)~최고가가격(300%)

- 최저호가가격은 호가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
- 최고호가가격 산정시 적용비율을 150% → 300%로 상향

## 사.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(2016/4/14 개정, 2016/4/25 시행)

### 1) 개정 이유

- 통화선물거래와 일반상품선물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상품의 선물거래는 약정가격이 있는 경우 괴리수준과 상관 없이 약정가격(종가)을 정산가격으로 사용하도록 변경하기 위함

### 2) 주요 내용

- 주식상품선물거래 등의 정산가격 산정방식 변경 및 통화선물거래 최근월종목의 정산기준가격 적용 괴리수치 변경 (제103조 제3항, 별표 19의3)
  - 통화선물거래와 일반상품선물거래를 제외한 주식상품선물거래, 금리상품선물거래 등의 정산가격 산정시 정산기준가격(이론가격 등)을 적용하는 괴리조건을 삭제
    - 최종약정가격을 정산가격으로 사용
  - 통화선물거래 최근월종목의 정산기준가격 적용 괴리수치를 미국달러선물거래는 '1.5%'에서 '0.2%'로 변경하고, 엔·유로·위안 선물거래는 각각 '0.3원'에서 '0.1%'로 변경



## 아.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개정<sup>1)</sup> (2016/4/18 개정, 2016/4/20 시행)

### 1) 개정 이유

- 회원의 업무 및 내부통제 현황에 대한 컨설팅, 회원의 직원 징계는 회원이 자체 처리하는 ‘회원처리사항 통보’ 등 감리관련 제도를 신설하고,
- 회원징계 및 그 임직원의 징계요구에 대한 공표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며,
- 투자경고종목 지정해제 이후 주가가 단기간에 재상승하는 경우 투자경고종목 재지정 요건을 신설하여 시장경보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

### 2) 주요 내용

- 컨설팅 근거, 절차 및 방법 마련 (제2조의4, 제2조의5)
  - 회원의 공정거래질서 유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회원의 업무 및 내부통제 현황 등에 대한 컨설팅 근거를 마련
    - 회원의 요청에 따른 컨설팅도 허용되며, 컨설팅 실시 이전에 컨설팅 대상, 기간·방법 및 자료수집 범위 등을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함
- 컨설팅 결과 통보 및 위규사항 발견시 조치방법 마련 (제2조의6 및 제2조의7)
  - 컨설팅을 종료한 때에는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회원에게 통보하고, 회원사 임원을 대상으로 컨설팅 결과 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
  - 컨설팅 결과 위규행위가 발견된 경우 위규내용 및 시정 필요사항이 담긴 ‘시정필요사항’ 통보 후 회원으로부터 시정결과를 회신
  - 효과적인 컨설팅 결과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컨설팅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함
- 투자경고종목 재지정 예고, 지정, 해제 요건 신설 (제3조의3 제1항 제7호, 제2항 제6호, 제5항 제1호 라목)

1) 제3조의3 제1항 제7호, 같은 조 제2항 제6호 및 제5항 제1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 이후 투자경고종목에서 지정해제되는 종목부터 적용. 제23조 제1항 제4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 후 발생하는 위반분부터 적용



- 투자경고종목에서 해제되는 모든 종목을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예고하고, 특정일 주가가 지정일 전일 및 해제일 전일 종가보다 높고, 최근 2일간 40%이상 상승시 투자경고종목으로 재지정
- 재지정 이후 10일째 되는 날 종가가 직전 투자경고종목 해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 해제

개선·시정요구 사항의 점검 근거 마련 (제14조 제5항)

- 징계사안에 대한 개선·시정요구 병과 근거를 마련하고, 개선·시정요구 사항의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함

징계 등의 가중 또는 감경 기준 변경 (제18조)

- 징계에 병과 된 개선·시정요구의 미이행 후 2년 내에 징계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가중할 수 있도록 함

회원처리사항 통보제도 도입 (제19조 제1항 단서)

- 회원의 직원에 대한 징계요구(감봉이하) 사항에 대하여 회원이 자체 결정하여 징계하는 ‘회원처리사항 통보’ 제도 도입

징계 및 징계요구의 공표방법 개선 (제20조)

- 회원징계 등의 공표를 불공정거래 예방 및 투자자보호 필요성, 회원의 위규 행위 방지노력 정도 등을 감안하여 공표 여부 및 방법을 결정

약식제재금 부과대상 확대 (제23조 제1항)

- 누적호가한도수량 관련 약식제재금 부과근거를 마련

**자. KRX금시장 운영규정 개정 (2016/4/22 개정, 2016/4/22 시행)**

**1) 개정 이유**

- KRX금시장 개장 2년이 경과했지만 아직도 호가잔량, 스프레드 비율 등 유동성이 부족하여 시장참가자의 참여가 저조한 바, 유동성공급자제도를 도입하여 안정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고자 함



- 협의대량매매의 참여자 범위 확대 및 계좌 제한 폐지 등 거래 제약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시장참가자의 거래 편의성을 제고하고 금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

## 2) 주요 내용

- 유동성공급자제도 도입 (제5장 제2절의2)
  - 유동성공급자를 통한 호가제출 확대로 거래 체결률 향상 도모
  
- 협의대량매매 참여자 범위 확대 등 (제50조 제1항 제2호, 제78조의2 제1항 및 제2항)
  - ‘실물사업자인 회원’으로 한정된 협의대량매매 참여자 범위를 일반 회원인 증권회사 등으로 확대하고 계좌의 제한을 폐지

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